

#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처무규정

개정 (2023.02.22.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기단체연합회 (이하 “연합회” 이라 함.) 의 규약 제35조 규정에 의거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인사

**제2조(적용)** 직원의 채용, 보직, 승진 및 면직에 관한 인사 관리는 본 규정에 의하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따로 정한다.

**제3조(채용)**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 어느 각호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.

- 채용 후보자가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될 때
- 업무의 성질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해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할때
- 법력에 의하여 특별채용 하도록 규정한 경우
-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

②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.

**제4조(구비서류)**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.

- 지원서 (소정 양식)
- 이력서
-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

4.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
5. 경력 증명서
6. 면허 또는 자격 증명서
7. 기타 본 연합회가 정하는 서류

② 필요한 경우, 학력 및 경력, 병역, 신원 관계 등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.

**제5조(결격사유)**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-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④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유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⑤ 회장의 친,인척인 자

**제6조(보직)** 보직은 직급에 따르되, 각자의 기능, 능력 등을 참작하여 본 연합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승급, 승진)** ① 직원의 승급, 승진은 사무총장 또는 부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8조(특별승진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.

- ① 비중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본 연합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
- ② 기타 업무 수행에 있어 특별히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

**제9조(승진의 제한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을 할 수 없다.

- ① 전채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② 감봉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③ 정직된 자로 복직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## 제3장 직제

**제10조 (직능분류)** ① 직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
1. 정규직
2. 계약직

② 계약직은 본 연합회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이에 관한 채용, 보직, 급여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**제11조(기구)** ① 본 연합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
② 회장은 사무 형편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 기구를 신설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2조(정원)** 사무처의 정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정한다.

**제13조(분장업무 및 전결사항)** ① 각 부서의 분장업무 및 위임전결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## 제4장 복무

**제14조(성실)** 직원은 본 연합회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,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본 연합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신의)** 직원은 신의를 숭상하고 품성을 도야하며, 본 연합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6조(기밀보완)**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7조(청렴의 의무)** 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,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.

**제18조(근무시간)** 근무 시간은 대한체육회 근무시간에 준하며 본 연합회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9조(시간외 근무.공휴일 근무)** 사무총장이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**제20조(근태)** ① 직원은 최소한 근무시간 10분전에 출근하여 제17조에 의한 근무시간 시작과 동시에 집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② 직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, 지각 또는 조퇴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근무 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21조(휴일)**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정한다.

1. 법정 공휴일
2. 근로자의 날
3. 정부가 정한 임시 공휴일 및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
4. 본회 창립기념일, 대한체육회 창립기념일

**제22조(휴가의 종류)** ① 직원의 휴가는 정기휴가, 연차휴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를 구분한다.

② 정기휴가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 5일 이내로 한다.

③ 휴가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3조(연차 휴가)**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,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

②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

③ 전 2항의 근무기간에는 정직 및 휴가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무단 결근 일은 연 월차 휴가에서 제외한다.

**제24조 (연차 휴가 계획.허가)** ① 연차 휴가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분할 실시할 수 있으

며,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시 시기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휴가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연차 휴가는 1회에 7일을 넘지 못하며,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 연차 휴가는 직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 월차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 허가되어야 한다.

**제25조(병가)**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허가할 수 있다.

② 병가 일이 3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공가)** 공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여야 한다.

1.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, 소집, 검열,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
2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
3. 천재지변, 교통차단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
4. 공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(국회, 법원, 검찰) 또는 공공 기간에 출석할 경우

**제27조(특별휴가)**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1. 결혼 : 본인 7일, 자녀 1일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, 자매 1일
2. 회갑 : 본인 및 배우자 7일 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1일
3. 출산 : 배우자 10일
4. 사망 : 직계존비속 7일
5. 탈상 : 직계존비속 2일
6. 기타 : 본인 거주지가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7일

② 제1항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

가산한다.

③ 임신 중의 여직원은 그 출산일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, 유산하였을 경우에는 7일간의 휴가를 얻는다.

④ 여성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
**제28조(출장)** ① 직원이 본 연합회의 업무 (이하 ‘공무’ 라 한다.)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.

② 출장 용무 변경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 외에 여행하거나 지정 출장 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출장자가 귀임 하였을 때에는 비중 있는 업무의 경우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국외여행)** ① 임직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 여행은 회장이 허가한다.

② 공무로 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복명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여행 목적 및 결과보고서 등을 유관 기관에 송부하여 유사 목적 사업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.

③ 직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무총장 승인후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.

**제30조(건강진단)**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매 1년마다 전 직원에 대하여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

## 제5장 급여

**제31조(호봉책정)** ① 신규채용인 경우의 호봉책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호봉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군복무 및 유사경력은 별도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의한다.

② 초임호봉 책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

에 산입하며, 잔여기간의 산정에 있어 15 일 이상은 1 개월로 하고 15 일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32조(급여책정)**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.

①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 단 2022년 3월 29일 기준을 최저지급 기준으로 한다.

1. 기본급여
2. 상여금
3. 수당

② 근로계약서상에 협의된 금액 이외 대한체육회 인건비보조금 인상의 경우는 인상금액 전액과 별도의 성과금 지급시 성과금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③ 급여는 항목 구분을 위해 각종 제 수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
④ 중식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연합회에서 제공한다.

**제33조(급여계산)** ① 급여의 지불 기간 계산은 월 1일부터 말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계산한다.

② 급여는 임명, 전보, 승진,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③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때, 그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.

④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직원이 퇴사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6장 상벌

**제33조(표창)**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한다.

1.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, 타의 모범이 되는 자
  2. 헌신적인 노력과 업무 개선을 창안하여 대외적으로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
  3. 이사회 결의에 따라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자
- ②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한 때에는 표창 종류별로 각각 표창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34조(징계)**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견책
  2. 감봉
  3. 정직
  4. 면직
  5. 파면
- ① 직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**제35조(직위해제 및 권고사직)**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고, 제3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
  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.)
  3.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-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3호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거나 사직을 권고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.
- ④ 회장은 제3항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

야 한다.

⑤ 제4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세부사항은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7장 퇴직

**제36조(퇴직)**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**제37조(정년퇴직)**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를 기준한다.

②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본 연합회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1년 단위로 정년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.

**제38조(퇴직금)** ① 본 연합회의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.

② 회장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중간결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대한체육회가 보조하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지원 즉시 정산 지급한다.

④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한다.

**제39조(퇴직 적립금)** ① 퇴직금은 연합회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하며 별도의 계정으로 퇴직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 관리한다.

② 본 연합회는 퇴직금을 매 회계연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, 계상 금액은 직원 정원의 총 급여 예산의 1개월분 평균 급여로 한다.

**제40조(지급률)** 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년당 1개월분의 평균 급여로 한다.

② 평균 급여라 함은 퇴직 이전 3개월간 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
③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, 형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.

④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, 지급해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**제41조(근속연한 계정)** 근속 연한은 발령일로부터 가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. 다만,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속일수/365로 계산한다.

**제42조(근속결격)** 휴직 및 정직 기간은 근속 년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원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 년한에 통산한다.

**제43조(수령권자)**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유가족이라 함은 근로 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.

**제44조(지급일)** 퇴직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## 제8장 보칙

**제45조(규정제정.준용)**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인사규정, 복무규정, 연봉제 운영규정 등을 참고하여 본 연합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### 부칙 (2019.03.11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2021.03.16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칙 (2022.03.29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칙 (2023.02.22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